

##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심사보고

심사경과

1. 심사일정

가. 제안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1997. 4. 28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• 제5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(97. 5. 3.) 상정  
 • 제5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(97. 9. 27.)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설명자 :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용국)

○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시행에 따라 300m 이내 주민대표 3명 선정.

선정결과

주 소	성 명	주민등록번호	비고(연락처)
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5-14	임미자	640725-2324315	676-9946
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3-13	이연리	550410-2408736	672-0701
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5-21	이성자	641015-2323535	672-2146

###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

의안번호	제261호
의결년월일	97. 9. 30. (제55회)

제출년월일: 97. 4. 28.

제 출 자: 부천시장

제안이유

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(중동폐기물소각시설) 설치·운영으로 환경상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

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·간접영향권(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)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시의회와 시장이 주민협의체 대표를 3인 이내로 선정토록 명시되어 있어 시의회에 주민협의체 대표 3인의 선정을 요구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1. 선정요구인원 : 3인

2. 자격요건 (도면 : 별첨 #1)

오정구 삼정동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 300m 이내 거주자

3. 근거법규
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

주민협의체 선정규정 및 임무

1. 주변현황

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부지경계선 300m 이내 주택 약 900세대 존치

2. 대표선정기준

○ 선정인원 : 6인 (시의회 3인, 시장 3인)

○ 임 기 :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

3. 구성방법

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자 중에서 선정. 단 97년도 환경상영향조사 후 직·간접영향권 재설정 예정임

4. 임 무

선정된 주민협의체 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권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음.

5. 폐기물소각시설주변지역 거주현황 : 별첨 #1

6. 주민협의체 대표 선정승락서 (안) : 별첨 #2

첨부 #1

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(중동소각장)주변현황도

